의안 번호	1821	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0. 1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0. 1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0. 14.(목)

2. 제안이유

○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구청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고자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 대상시설 현황 및 위탁기간

시설명	소 재 지	규모		정원(명)	종사자(명)	위탁기간
		부지	건물(㎡)			
중구청 어린이집	중구 단장골길1 (복산동)	지상1층	143.12	23	6	2022.3.1.~ 2027.2.28.

※ 위탁계약기간: 5년(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위탁)제2항)

나. 위탁사무의 범위

- 직장어린이집 운영 업무 전반
- 그 밖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다. 수탁자 선정방법

- 모집신청에 따른 중구보육정책위원회(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) 심사

4. 근거법규

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)

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)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

○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경험이 많은 위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 사료됨.

6. 참고사항 : 직장어린이집 시설 현황

중구청 어린이집 현황

□ 운영현황

○ 위탁기간 : 2017. 3. 1. ~ 2022. 2. 28. (5년간)

○ 보육정원 : 23명〔연령은 구분되지 않음. 총 23명 정원으로 인가됨〕

○ 현　　원 : 10명〔만1세 7명 / 만2세 3명〕 ※ 만 3세이상 미운영

○ 보육종사자 : 6명 원장 1/보육교사 2/조리원 1/보조교사 1(국비)/연장교사 1(국비)

< 보조교사, 연장교사는 국가에서 전액국비로 제공 >

※ 국가에서 영아 (0세~2세)반에 보조교사 제공(일일 4시간 근무)

: 보조교사 1명, 근무시간 09:00~13:30분

※ 국가에서 영.유아(0세~5세)반에 연장반교사 제공(일일 4시간 근무)

: 연장교사 1명, 근무시간 15:00~19:30까지 근무

※ 보육교사 배치기준(1명당) : 만0세 3명/만1세 5명/만2세 7명/만3세 15명

○ 위탁범위 :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등 운영 및 관리 전반

○ **위탁예산 : 172,000천원(민간위탁금)** ※ 보육교직원 인건비, 운영비 지원

※ 직장어린이집 설치

○ 기　　간 : 2016. 3. 7 ~ 2017. 2. 18

○ 규　　모 : 지상2층, 연면적 218.72㎡, 철근콘크리트조

○ 주요 시설현황

- 1층(어린이집) : 143.12㎡〔사무실 8.6㎡, 보육실 66.08㎡, 조리실 6.4㎡, 교구실 4.4㎡ 등〕

- 2층(예비군기동대 창고 등) : 75.6㎡

○ 총사업비 : 444,500천원〔설계20,000, 공사비 415,000, 감리비7,000, 시설부대비 2,500〕

○ 주요내용 : 친환경 소재 (피톤치드-편백나무, 친환경페인트), 일체형 유아용 세면대 등

○ 추진상황

- 2016. 3.　7 ~ 5. 15 : 실시설계
- 2016. 11. 21 ~ 2. 18 : 공사착공 및 준공
- 2017. 1. 11 ~ 1. 31 : 어린이집 운영 위탁 모집공고 (5명 접수)
- 2017. 2. 7 :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(2. 8 선정자 공고)
- 2017. 3. 2 : 중구청어린이집 위·수탁 협약
- 2017. 3.　2. ~ 3. 24 : 보육교사 및 원생모집 및 선정
- 2017. 3. 15 / 3. 30 : 학부모 설명회 / 학부모 오리엔테이션
- 2017. 3. 29 : 인가 (대표자 중구청장, 원장 김현숙)
- 2017. 4. 1 ~ : 운영　※ 2017. 4. 3 : 개원식

근 거 법 규

영유아보육법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"위탁보육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20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)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.

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·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 다만,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(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)
2.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·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25조(사업주의 비용 부담)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(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

제6조(위탁운영) ① 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4조의2 별표 8의2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선정한다.

③ 제2항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.

1. 보육을 전담하는 등록 사회복지법인
2.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등록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3. 규칙 제12조제1항의 별표4에 따른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
4. 법 제21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

제8조(위탁기간) 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그 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새로 선정된 수탁자의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위탁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그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